

자산배분기준

제 정 : 2017.01.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투자대상자산)

- ① 이 기준은 회사내 운용담당자등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직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항 단서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신탁계약서에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 가.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바. 증권금융회사
 - 사. 종합금융회사
 -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6.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7.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8. 금리 또는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제3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등)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영,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금융투자업자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자신탁”라 함은 법 제9조제18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 “운용담당자”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매매담당자”라 함은 운용담당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직접 자산의 취득, 매각등을 실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통신수단”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6. “당일 발행자산”이라 함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
7. “종목코드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8. “텍스트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제2장 자산배분

제5조(자산배분 원칙)

- ① 회사는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 등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접수 우선 원칙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고,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전에 정한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공정하게 안분 배분하여야 한다.
 1. 하나 또는 다수의 투자신탁에서 다른 시간에 매매주문을 하여 취득·처분한 자산은 주문접수시간 순서대로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정한 투자신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2. 다수의 투자신탁에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주문번호로

매매주문을 하여 취득·처분한 자산은 그 다수의 투자신탁에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실제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정한 투자신탁별 주문수량을 기초로 동일한 시간에 주문한 다수의 투자신탁 간에 수량을 안분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운용 상황 및 투자대상자산의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명시한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으나,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운용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자산배분의 정정)

- ① 회사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처분 등의 체결 이후에도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별지1)을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산배분기준의 의결)

회사는 자산배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자산배분기준의 공시)

회사는 자산배분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

제9조(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

- ①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종목, 주문금액,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투자신탁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작동 불능,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주문 내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의 작동 불능, 오류로 인한 사유시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그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③ 매매주문서 및 자산배분명세서는 전산으로 기록·유지되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주문서와 자산배분 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매매주문서의 작성 및 매매주문의 집행

제10조(매매주문서의 작성)

- ① 운용담당자는 매매주문서상의 가격주문은 해당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되며, 지정가격, 시장가격 또는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매매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범위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별로 적합한 주문방식(종목코드주문, 텍스트주문,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 등)을 적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
- ③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2항의 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제11조(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

-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및 RP시장의 특성, 각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및 운용제한 등을 감안하여 콜 또는 RP거래를 할지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신탁별로 콜, RP 에 대한 운용가능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운용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운용가능 자금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 1 개월 내 투자신탁, 해지 예정인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제 12 조(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 ①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 16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운용담당자는 제 1 항에 따라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③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 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3조(매매주문의 집행)

- ① 매매담당자는 사전에 작성된 매매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②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 등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배분 및 자산배분명세서 작성

제14조(자산배분명세서 작성)

- ①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자산배분명세서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 배분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운용과 매매의 분리

제15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겸직금지)

- ① 회사는 공정한 자산배분 등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용 등 조직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담업무 분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회사는 업무대리자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3.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4.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제16조(운용담당자의 업무)

- ① 운용담당자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명칭, 가격, 수량, 시장동향 등)의 수신 및 단순문의를 할 수 있다.
- ②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중개업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
 2.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의사를 암시하는 행위
 3. 투자중개업자 등과 종목에 대한 수량·가격을 협의(운용담당자의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매매담당자가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제7장 업무처리 실태 점검

제17조(준법감시부서의 감시)

준법감시부서는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2017.01.0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등록을 통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운용역	팀장	본부장	준법감시인

사전자산배분 정정승인신청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전자산배분 내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1. 내역

자산 종류	종목코드	종목명	거래 구분	원주문펀드				배분 정정펀드			
				펀드명	운용역	수량	금액	펀드명	운용역	수량	금액

2. 정정사유

- 시스템오류
-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3. 정정사유 발생원인(구체적으로 기재, 근거자료 첨부)